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9. 9. 20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7월 15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6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1999년 9월 14일 상정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종박)

- 가. 개정이유
구민에 대한 종합 복지·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사용허가절차 및 제한조건 등을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좀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.
- 나. 주요골자
 - 1) 대관제한규정폐지(회관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, 공안질서유지 및 공사양속을 해할 우려 등)
 - 2) 유상으로 회관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(강당, 소회의실 → 강당, 소회의실, 사무실 등)
 - 3) 입장제한 폐지(만취자,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등)
 - 4)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(행정기관, 유관기관, 직능단체 → 국가, 지방자치단체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송성만)

등 조례안은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·결정한 사항으로 별개 조례로 되어 있는 “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”와 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”를 통합·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입장제한규정과 대관제한승인규정 등은 폐지하고, 제6조의 대관범위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폭넓게 확대·개방하였으며, 제9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구민과의 형평성을 기하고, 공익목적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구민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.

5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68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13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민에 대한 종합 복지·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사용허가절차 및 제한조건 등을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구민들이 동 회관을 좀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.

2. 주요골자

- 가. 대관제한규정 폐지(회관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, 공간질서유지 및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 등)
- 나. 유상으로 회관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(강당, 소회의실 → 강당, 소회의실, 사무실 등)
- 다. 입장제한 폐지(만취자,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등)
- 라.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(행정기관, 유관기관, 직능단체 → 국가, 지방자치단체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사항 : 없음
- 라. 입법예고결과 : 이견없음

첨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 1부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구민에 대한 종합 복지·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영관리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.

제3조(공무원) ①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, 관장은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②전항의 공무원은 총무과 소속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운영 및 관리) ①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1.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
- 2. 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 또는 15일 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
- 3. 구민회관을 증·개축하거나 중요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

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제5조(대관) 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.

②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대관범위) 유상으로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기본시설 : 강당, 소회의실, 사무실 등
2. 부속시설 : 피아노, 조명시설, 무대시설, 음향시설, 영사기능 등

제7조(사용료징수) ①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2.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

제8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,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1. 오전 : 07 : 00부터 12 : 00까지
2. 오후 : 12 : 30부터 17 : 30까지
3. 야간 : 18 : 00부터 23 : 00까지

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사용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였어도 사용계약한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.

제9조(사용료 특례 및 감면) ①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구민을 위한 예식, 경로행사, 복지관련행사, 비영리문화행사(학술·예술·교양·체련행사)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사용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.

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
3. 사용예정일 3일전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
제11조(사용자의 설비)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대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당시 구민회관 건물에 대하여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③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”는 폐지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

구분 시설명	단 위	사용료 (기준액)	비 고		
기본 시설	대강당	좌석당 1회	100원	1. 오전은 기준액의 50%, 오후는 기준액의 70%,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. 2.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%를 가산함. 3.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%로 함. 4.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(철야 포함)작업시는 야간 사용료의 50%로 함.	
	소회의장	평당 1회	250원		
기타 시설	피 아 노	1회	10,000원		오전, 오후, 야간 대관중 1회 사용료임.
	영화촬영	1시간	10,000원		1. 사용할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. 2. 무료입장 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시의 조명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50%로 함
	무대조명	1시간	20,000원		
	무 대	1시간	10,000원		
	음 향	1회	10,000원		
영 사 기	1시간	10,000원			

※ 1회 사용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, 기준시간초과 30분 이내마다 기준요금에 20%씩 가산한다.

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
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개정조례(안) 대비표

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	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<p>제1조(설치)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·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.</p>	
<p>제2조(위치)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.</p>	<p>제2조(위치) 현행과 같음</p>
<p>제3조(공무원) ①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, 관장은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②전 항의 공무원은 총무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	<p>제3조(공무원)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</p>
<p>제4조(운영 및 관리) ①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 대역시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1.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2. 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 또는 15일 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 3. 구민회관을 증·개축하거나 중요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운영 및 관리) ①현행과 같음</p>
<p>제5조(대관) 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. ②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대관)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</p>

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와 개정조례(안) 대비표

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	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(이하 “구민회관”이라 한다)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에 포함</p>
<p>제2조(대관범위) 유상으로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본시설 : 강당, 소회의실 2. 부속시설 : 피아노, 조명시설, 무대시설, 음향시설 영사기 등 	<p>제6조(대관범위) 유상으로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본시설 : 강당, 소회의실, 사무실 등 2. 현행과 같음
<p>제3조(대관승인 및 제한) ① 회관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용자 주소·성명 2.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3. 사용기간 및 시간 4.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5. 사용시설 및 설비 <p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.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.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<p>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·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·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 3.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.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	<p>제3조(삭제) (시행규칙과 중복)</p>

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와 개정조례(안) 대비표

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	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<p>제4조(사용료 징수대상) ①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지원·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(이하 “공익단체”라 한다) 이외의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. <u>공익단체일지라도 비공익성 행사나 흥행성 공연 등으로 사용할 시</u> 3.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<p>② 구민을 위한 예식 사용이나 경로행사 등 복지관련 행사 또는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(학술·예술·교양·체련행사 등)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7조(사용료 징수대상) ①현행과 같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</u> <p>(삭 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<p>②개정조례(안) 제9조제2항에 포함</p>
<p>제5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,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오전 : 07 : 00부터 12 : 00까지 2. 오후 : 12 : 30부터 17 : 30까지 3. 야간 : 18 : 00부터 23 : 00까지 <p>②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.</p>	<p>제8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현행과 같음</p> <p>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사용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였어도 사용 계약한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.</p>
<p>제6조(사용료 특례 및 감면) ①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같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</p> <p>②구청장은 <u>공용 또는 공익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에 따라 구민회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사용료 특례 및 감면) ①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같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</p> <p>②구민을 위한 예식, 경로행사, 복지관련행사, 비영리문화행사(학술·예술·교양·체련행사)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중 <u>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

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와 개정조례(안) 대비표

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	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<p>제7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7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.</p> <p>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.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.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	<p>제10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현행과 같음</p> <p>②현행과 같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.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<p>제8조(사용자의 설비)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</p> <p>②제1항에 대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사용자의 설비) ①현행과 같음</p> <p>②현행과 같음</p>
<p>제9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현행과 같음</p> <p>②현행과 같음</p>
<p>제10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.</p>	<p>제13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현행과 같음</p>
<p>제11조(입장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. 만취자 3. 타인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.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	<p>제11조(삭제) (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)</p>

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와 개정조례(안) 대비표

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	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당시 구민회관 건물에 대하여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③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”는 폐지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1999. 9. 20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7월 15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6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1999년 9월 14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종박)

가. 개정이유

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수혜를 주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서 일부 조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학금지급 형평성 유지 및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1) 통장자녀 장학생의 장학기준중 특기장학생의 통장경력 1년 이상을 요하는 규정 삭제 (안 제3조제1항)
- 2)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원 제한인 15%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함(안 제6조)
- 3)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을 때는 구에서 재산변동 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규정 삭제(안 제9조제1항제2호)